2025년 「온라인쇼핑몰(ON충북) 판로지원」 소상공인 모집 공고

도내 소상공인의 시장 개척과 판매망 확장 및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적 안정과 성장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「온라인 쇼핑몰(ON충북) 판로지원」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1일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

1 사업개요

- O (사 업 명): 온라인쇼핑몰(ON충북) 판로지원 사업
- O (지원목표): 도내 소상공인 업체 25개소 지원
- (지원대상) : 지원 요건*을 충족한 도내^(소재지,거주지) 소상공인^(소상공인기본법)
 - ※ 온라인쇼핑몰(ON충북) 입점 요건(https://onchib.co.kr/)
 - O (공통) 충청북도 소재의 합법적 통신판매 자격을 갖춘 개인 및 단체
 - (생산물) 도내에서 생산된 농·수·축·임산물
 - (가공식품)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한 업체
 - (건강기능식품)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
 - O (기타) 충청북도기업진흥원(담당부서)이 입점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생산자나 단체·기업
- (지원내용)
 - 상품판매 상세페이지 제작(사진촬영 포함)
 - : 쇼핑몰 상품 판매 상세페이지 제작 비용 업체당 최대 880천원 지원
 - 온라인 기획전(할인쿠폰 발행)
 - :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비용 업체당 최대 1.120천원 지원
 - 소상공인기획관 입점 및 운영

○ (지워제외대상)

- 식품위생법,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지원 품목 대상에 서 제외함(ex. 담배, 의약품 등)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
- 휴·폐업 업체,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- 금융·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(별첨2)
-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)인 경우
- ** 통신판매업 신고필증, 품목 제조 보고서 또는 상품정보 확약서 제출 가능해야함

○ (지원절차)

	사업모집 공고 (3월)	• 홈페이지 공고 게시		
	<u></u>			
	신청서 접수 (3월) • 지원희망 소상공인 신청(소상공인 → 충북기업진흥			
	<u></u>			
지원 선정	검토 및 선정평가 (4월)	소상공인 별 적격여부 검토가점사항 및 서면평가 실시		
				
	지원선정 (4월)	• 선정결과 개별통보(충북기업진흥원→소상공인)		
	\downarrow			
	입점 및 기획전 운영 (5~11월)	성 소성공인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및 입점소상공인기획관 운영		
	\downarrow			

※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결과

설문조사 및 결과

(12월)

• 지원성과, 설문응답 분석 및 결과보고

2 모집개요

- (신청기간) 모집 공고일 ~ 2025. 3. 24.(월) 17:00까지
- (신청방법) 이메일(cbsb2@naver.com) 또는 방문 접수
 - ※ 방문처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,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
 - ※ 이메일 제출
 - 제출서류명 기재 후 제출(ex. "사업자등록증_업체명")
 - 발송 시 메일 제목 『대표자명_업체명_판로지원 신청』 기재 요망
- O (문 의 처)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연제준 대리(☎ 043-230-9768)
- (제출서류)

구분		내 용	비고
	1	지원신청서	서식1
	2	사업계획서 및 상품 소개서	서식2
	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, 입점 자격 자가 진단서	서식3
	4	참여확약서	서식4
	5	주민등록등본(대표자 거주지 확인)	
	6	사업자등록증명(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확인)	
필 수	7	통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	
	8	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(신청기간 내 유효기간)	
	9	직전년도 재무제표(확인원 포함)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※ 면세사업자 경우 수입금액증명원 등 제출 가능	
	10	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
	11	국세·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(개인 / 법인사업자 구분)	
	12	품목 제조 보고서 또는 상품정보 확약서	별도서식
74 EN	13	지원희망 제품 샘플	-
선 택	14	각종 식품 품질 인증 및 특허, 지식재산권 사본 등	가점사항

3 **선정방법**

○ (선정방법)

- 기업선정 : 신청 마감 후, 정량·정성 평가 진행(고득점순 우선선정)
- 심사항목 : 매출, 고용현황, 제품 경쟁력 등(별첨1 참조)
- 선정안내 : 최종 대상자 별도 지원 안내
- * (현장실사) 필요 시 선정 업체 실제 운영 및 시설 가동 가능 여부 현장확인 수행
- * 중도포기자 대비에 따른 예비 소상공인 선정

기타사항

- O 첨부된 신청서 서식 활용 및 각종 인증서 및 허가서 보유 시 서류 제출 필요
- O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함
- O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 착오나 연락불가, 주의 사항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
- 본 공고문의 세부내용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O 지원에 선정된 기업이 운영사에 상세페이지 관련 협조를 하지 않아 수 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O 상품 샘플의 경우 서면 심사 시 활용되며 필수 제출 사항이 아님
- O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
- O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중도포기 및 불성실 이행 시, 향후 동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O 추가모집 또는 공석 발생 시 다음 순위에 의해 우선 지원예정
 - 예비순위자* 중 고득점 순
 - 별도 추가모집에 의해 선정된 업체 중 고득점 순
 - * 예비순위자 : 당기 사업의 기 선정 제외된 업체 중 합격기준 점수 이상인 업체
- O 기재 사실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취소 될 수 있음

별첨 1 온라인 쇼핑몰 판로지원 선정 평가기준

○ 정량평가(50)

항목	평 가 기 준	배점	평점	비고
	연매출 5억원 미만		20	전년(전기) 매출액
매출	연매출 5억 이상 ~ 20억 미만	20	15	- 재무제표(확인원 포함) 또는
현황	연매출 20억 이상 ~ 50억 미만	20	10	
	연매출 50억 이상		5	·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고용	근로자 5명 이하		10	-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
 현황		10	5	- 공고일 이후 발급
	_			-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 제외
	3년 미만		20	
 업력	3년 이상 ~ 6년 미만	20	15	- 사업자등록증명 개업일로부
합역	6년 이상 ~ 9년 미만	20	10	터 공고일 기준
	9년 이상		5	

○ 정성평가(50)

항목	세부항목(요소)	배점
신청자 역량	- 사업계획서 작성 충실성 - 지원 의지 및 전문성(관련 경력 등)	15
사업계획의 적설성	- 제품의 경쟁력(맛, 기능, 디자인 등 구매 매력도) - 로컬푸드 적합성 - 가격합리성 및 제품구성	20
사업운영의 신뢰성	- 생산 및 품질관리 신뢰도 - 전자상거래 적합성	15

O 가산점(10)

항목	세부항목(요소)	배점
각종 농축산물 품질 인증	- 식품안전관리인증(HACCP), 농산물우수관리(GAP)인증, 친환경인증, 무항생제 인증 등	5
지식재산권 등	- 사업 관련 특허증, 실용신안, 상표권, 디자인권 등 등 록 여부	5

- ※ 동점자의 경우 매출액 적은 기업 우선 선발
- ※ 가점 세부항목 중복 시 하나만 적용

별첨 2 지원제외 업종(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)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40333	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역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 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_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	부동산업
	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
	- 부동산관리업(6821)
68	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
	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
	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
	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
	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
9612 중	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
	징구
	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
기타	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
	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